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9.] [총리령 제1730호, 2021.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현지실사 거부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을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송하는 자료·영상 등의 보안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73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9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 및 목적,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2.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제3호 위반사항란 중 "현지실사"를 "현지실사(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